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91 발의연월일: 2024. 9. 27.

발 의 자: 박정하・박성민・주진우

진종오 • 한지아 • 김위상

이인선 · 김승수 · 신성범

김용태 · 최은석 · 장동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경 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,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 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,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하여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의료지원) ①・② (생 략)	제7조(의료지원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
	하는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제
	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
	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
	되도록 하여야 한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